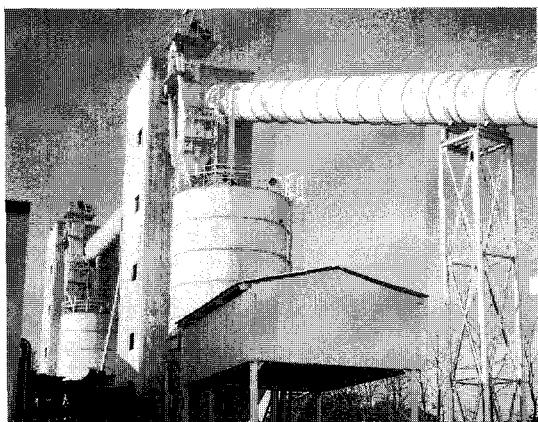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내용

## 건설신기술 평가기준·절차규정

지난 12월 6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설신기술 관련 업무를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지는 규정의 전문을 소개하고, 기타 주요개정내용을 요약·소개한다.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제3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신기술지정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규성·유일성 :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2.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공사비, 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3. 보급성 :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편리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 제3조 [신청서의 요건심사 등]

-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장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은 7일로 한다.

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된 경우(품질검사전문

기관 시험성적서 정본 1부 첨부 등)

2. 신청인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 등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연구원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미 신기술로의 지정이 거부된 기술을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③ 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자체없이 영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정취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공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32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된 기술의 명칭·구분·주요내용 및 범위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 [이해관계인 의견]

연구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견을 제6조에 의한 예비심사위원 및 제8조에 의한 신기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예비심사]

① 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위원회

에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미리 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예비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범위·내용의 적정성 여부

2. 첨부된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3. 신청기술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예비심사는 신청된 기술에 대하여 예비심사위원의 기술평가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점수제로 평가한다.

④ 연구원장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예비심사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예비심사방법·예비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 [예비심사 결과처리]

① 연구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된 기술중에서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보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연구원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영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신기술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기술분야에 따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을 상정하

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한다.

1. 신기술의 신기술 지정요건
2. 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기술의 보호 여부 및 그 기간
4. 시험시공·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동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기술에 대한 각종 시험의 필요성 여부 등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원장은 신청된 기술의 특성상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위원회 심사]

① 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0조 [신기술의 보호기간]

① 영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영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이하 “활용실적”이라 한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장기간 2~3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보통 상태이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가능하고, 선진국에는 미달하나 국내 공급 수준의 기술

2. 연장기간 4~5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양호하며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과 동등하여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3. 연장기간 6~7년 : 활용실적·보급성이 매우 양호하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불가능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을 능가하여 기술수출이 가능한 기술

#### 제11조 [심사결과 처리]

① 연구원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신기술로 지정하기 곤란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비밀유지 의무]

① 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직원·예비심사위원 및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사항을 공표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위원 및 위원의 경우 해촉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 [세부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원장이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프리랜스기술자제도 시범도입

종전에는 설계용역업체에 상시고용된 기술자만이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스기술자도 프로젝트별로 계약직의 형태로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의 인력고용부담이 줄어들고 우수기술인력의 활용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우선 건설교통부는 설계분야에 프리랜스기술자제도를 시범도입하고 용역 등을 통해 성과를 분석한 후 시공 및 감리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 기술자교육기간 단축

건설관련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전 3주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단축되고, 기술사나 건축사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종전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해 업무공백해소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 ■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강화

종전에는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진단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용역 발주시에도 설계나 감리분야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능력있는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였다.

### ■ 기술개발투자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기술개발투자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업체의 범위를 종전에는 공사실적 5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용역실적 200억 원 이상인 용역업체로 했으나, 앞으로는 공사실적 3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용역실적 100억 원 이상인 용역업체로 각각 확대해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용역업체 선정제도 개선

종전에는 5억 원 이상인 기본설계와 1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당해 용역업체의 기술력을 평가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기술력 평가를 해야하는 용역을 5억 원 이상인 기본설계와 10억 원 이상인 실시설계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조정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기술제안서(TP) 평가대상사업을 고난도 사업으로 한정해 기술력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고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 작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시에도 PQ심사 및 기술·가격분리입찰제가 도입되어 부실안전진단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 내진설계 명시

종전에는 발주청이나 용역업체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내진설계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소관시설물별로 정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 우수업체 지정범위 조정

종전에는 우수업체의 지정범위를 우수용역업체의 경우는 대상업체의 5% 이내로, 우수건설업체의 경우는 대상업체의 20% 이내로 했으나, 앞으로는 우수용역업체 및 우수건설업체 모두 대상업체의 10% 이내로 지정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설비 \*